대구지법 2025가단108017 토지인도 20250804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소 장

원 고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382
대표자 이호창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702호(율촌빌딩, 범어동)

피 고 1.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부산 동구 범곡로9번길 9-9 (범일동)
대표자 이치영

2. 김은득
부산 동구 중앙대로460번길 21, 3층(좌천동)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원고에게
가. 피고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김은득은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 중 가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 청 구 원 인 -

1.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는 원고 총공회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원고 총공회의 소유이고(갑제1호증의1내지4), 별지목록기재 4. 대구 북구 노곡동 산 78-2.임야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 1동도 원고 총공회의 소유입니다.

별지목록기재 3. 위 노곡동 451. 답 위에는 원고 총공회 소유의 대구기도원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원고 총공회가 총공회를 개최하는등의 집회를 하면서 위 산 78-2. 임야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건축하여 대구기도원등 관리자를 위한 숙소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2.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는 당초 망 백영희 목사를 총공회장으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그후 대표자를 이재순, 김삼암, 이호창으로 변경하면서 현재의 원고 총공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고 총공회는 원고 총공회와 동일하게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고 총공회에서 탈퇴한 이치영등이 결성한 단체로서 원고 총공회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단체이고, 원고 총공회나 피고 총공회 모두 비법인사단입니다.

3. 피고 총공회의 원고 총공회 참칭등 불법행위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가. 당초 소외 이치영은 원고 총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1992년 경 원고 총공회(당시 대표자 총공회장 이재순)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서 그 명칭을 원고 총공회와 동일한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로 사용하면서 이치영 스스로가 그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피고 총공회입니다.

나. 위 이치영은 원고 총공회를 탈퇴하면서 원고 총공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가 결성하고 소속된 피고 총공회라는 단체는 원고 총공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원고 총공회의 규칙상 총공회를 탈퇴하면 탈퇴자는 총공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총유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하며 원고 총공회는 잔류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종전 총공회의 재산은 당연히 원고 총공회 소속 잔존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4.20.선고 2004다37775판결).

원고 총공회는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 총공회 즉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의 대표자를 원고 총공회의 대표자변경결의에 따라 당초 이재순으로 되어 있다가 '김삼암'을 거쳐 2019.7.22. '이호창'으로 순차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1 내지 4).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다. 그런데 피고 총공회는 그 명칭을 원고 총공회와 동일하게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로 정하고 마치 피고 총공회가 원고 총공회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고 총공회의 결의를 원고 총공회의 결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이치영이가 원고 총공회장이 되었다면서 2019.11.7.경 원고 총공회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 총공회의 대표자 명의를 '이호창'에서 '이치영'으로 불법한 절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 총공회가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21.7.22. 위 각 등기부상의 그 대표자 명의로 본래의 '이호창'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총공회가 다시 2023.6.22. 동일한 불법한 절차로 대표자 명의를 '이호창'에서 '이치영'으로 변경등기를 하였고, 원고 총공회가 이호창으로 바로 잡으면 다시 이치영으로 변경하고 다시 이호창으로 바로 잡는 일이 4번씩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갑제1호증의1내지4).

라. 원고 총공회에서 2024.3.8. 마지막으로 그 각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이치영'에서 본래대로 '이호창'으로 바로 잡는 변경등기를 하였고,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갑제1호증의1내지4).

그런데도 피고 총공회는 그 무렵 피고 총공회의 결의를 원고 총공회의 결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각 등기부상의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대표자 명의를 다시 '이치영'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위 각 등기부에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의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시도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총공회에서 '이치영'을 대표자로 하는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는 '이호창'을 대표자로 하는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와 다른 단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이치영을 대표로 선출한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가 '**이호창을 대표로 선출한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와 동일한 총공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치영 측 즉 피고 총공회가 그것을 보완하지 못 하여 이치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 총공회는 위와같은 불법 대표자 변경시도가 좌절되자 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원고 총공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피고 총공회를 비롯하여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몇 개 단체가 연합한 단체가 원래의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인 것처럼 가장하여 2025.7.21.부터 '노곡동 기도원 및 총공회 재산관리를 위한 대표자선임' 등을 의제로 하여 각 단체에게 '총공회재산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2025.8.6. 소집한다고 통보하고(갑제4호증의1) 그렇게 불법으로 모인 자들이 결의를 하여 그 결의로서 위 각 토지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다시 이치영으로 변경하려는 등의 불법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총공회의

www.scourt.go.kr
법원출력용바코드

인터넷 사이트 pkists.net에도 그 소집통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갑제4호증의2). 위 단체들은 원고 총공회의 소속단체도 아니고 원고 총공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들입니다. 원고 총공회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소집자가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부산공회3)'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공회3'란 피고 총공회가 자칭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명칭입니다(갑제4호증의2).

피고 총공회는 위 소집통보서를 원고 총공회 소속 회원들에게도 부차별 발송하여 그 불법의도를 정면으로 들어내므로, 원고 총공회가 "**당초의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는 현재 이호창을 대표자로 하는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이고 그 밖에 이치영을 비롯한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단체들은 본래의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와는 무관한 별개의 단체이고 당초의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아니므로 본래의 총공회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여 총공회를 소집하는 따위의 불법행위를 하지말라**"는 내용증명을 피고 총공회에 보내어 엄중경고를 하였습니다(갑제4호증의3).

마. 또한 피고 총공회는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철대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권한도 없이 피고 김은득을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원고 총공회 회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원고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총공회에서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위 토지에 들어가 관리행위를 하려는 원고 총공회 목사회원 5명을 공동주거침입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갑제2호증,갑제3호증의1,2).

3. 원고 총공회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소송을 금하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피고 총공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고 원고 총공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온갖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나아가 원고 총공회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위 토지를 관리하려고 위 토지에 출입한 원고 총공회 소속 목사들 5명을 피고 김은득으로 하여금 형사고소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므로(갑제2호증,갑제3호증의 1,2) 이런 불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득이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우선 토지인도를 구하고, 불법설치한 대문의 철거와 숙소건물의 특정을 거쳐 숙소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도 추가할 작정입니다.

대구지법 2025가단108017 토지인도 20250804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입증방법

갑 제1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448)
갑 제1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449)
갑 제1호증의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451)
갑 제1호증의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산78-2)
갑 제2호증: 불기소 결정서
갑 제3호증의 1: 판결(대구지법2024고정256)
갑 제3호증의 2: 판결(대구지법2024노3702)
갑 제4호증의 1: 총공회재산정상화를 위한 임시총공회소집
갑 제4호증의 2: 소식(전체총공회 소집통지서)
갑 제4호증의 3: 내용증명

첨부서류

1. 소가계산서 및 토지대장
2. 소송위임장

2025. 8.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대구지법 2025가단108017 토지인도 20250804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별지목록

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448. 전 807㎡

2. 위 노곡동 449. 전 268㎡

3. 위 노곡동 451. 답 1,415㎡

4. 위 노곡동 산 78-2. 임야 142,810㎡

-이상-